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배움터

# 삼천교육통신

제 2020 - 40 호 교무실 063)221-5808 행정실 063)223-6243 http://jjsc.es.kr

#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학생출결 상황 관리 안내

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출결 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1. 기본원칙**

❍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
❍ 코로나19로 인해 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(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
**2. 등교중지학생** : 특정 학생이「학교보건법」제8조,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**'출석인정결석'**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## 【 등교중지 대상 학생 】

| 대상 | 등교중지 기간 | 등교 재개 요건 | 출결증빙 자료 |
|---|---|---|---|
| **확진학생** |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| ▪ 보건당국에서 판단 | 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
| **의사학생** | 14일 | ▪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|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 |
| **조사대상 유증상학생** | 14일 | ▪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|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 |
| **자가격리학생** | 14일 | ▪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| 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
| | 가족(동거인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| ▪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|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 |
| **유증상학생** | 증상발현* 후 3~4일<br><br>***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** | ▪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|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 |

**【 대상자별 정의 】**

- **확진학생**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의사학생**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조사대상 유증상학생**

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

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

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
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
• **자가격리학생**

① 해외 여행력*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

* `20.4.1.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

② 가족(동거인)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

• **유증상학생**: 37.5℃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・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

3. **고위험군학생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**를 통해 인정된 **기저질환**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**'출석인정 결석**'** **또는 '질병결석***' 처리**

*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
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*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
※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
4. **교외체험학습**

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**"심각, 경계" 단계인 경우**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"**가정학습**"을 포함 **(연 10일 이내)**

※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

-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

5. **기타 미등교학생:**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**'기타결석*'** 처리
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※ "심각, 경계"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'출석인정 결석' 처리 가능

※ **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**

6. **선별진료소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덕진보건분소 ☎ 063-250-3907** | **예수병원 ☎ 063-230-8114** |
| **대자인병원 ☎ 063-240-2000** | **전주병원 ☎ 063-220-7200** |
| **전북대학교병원 ☎ 1577-7877** | **호성전주병원 ☎ 063-240-8800** |

**2020. 5. 19.**

**전 주 삼 천 초 등 학 교 장**